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형사재판 확정판결 사실 통보의 근거 마련〉

■ 한병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085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형사재판 확정판결 사실 통보의 근거 마련〉

■ 한병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086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조문상

목 차

I . 개 요	1
【한병도의원안】 (국가공무원법)	1
【한병도의원안】 (지방공무원법)	2
II.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검토의견	4

I. 개 요

【한병도의원안】(국가공무원법)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한병도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11. 29.

다. 회부연월일 : 2024. 12. 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나 수사가 완료되어 기소된 공무원의 형사재판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 규정이 부재하여, 이후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등의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이 즉시 인지하지 못하고 인사조치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소를 제기하여 공무원의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인사조치 지연 등의 문제 발생을 차단하고 효율적인 행정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 83조제3항).

【한병도원안】(지방공무원법)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한병도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11. 29.

다. 회부연월일 : 2024. 12. 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나 수사가 완료되어 기소된 공무원의 형사재판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 규정이 부재하여, 이후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등의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이 즉시 인지하지 못하고 인사 조치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소를 제기하여 공무원의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인사조치 지연 등의 문제 발생을 차단하고 효율적인 행정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3항).

II. 검토의견¹⁾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공무원의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국가공무원법-안 제83조제3항, 지방공무원법-안 제73조제3항).

구분	현행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② (생략) ③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때,</u> <u>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u> <u>된 때에는</u> ----- -----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징계의 관리) ①·② (생략) ③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및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3조(징계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때,</u> <u>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u> <u>된 때에는</u> ----- ----- -----.

1)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조문 취지 및 개정 내용이 동일하여 「국가공무원법」의 조문을 기준으로 검토하였음.

2. 검토의견

현행법은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법 제69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고 이 경우 사유 발생일인 형 확정일자에 당연퇴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그 밖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되었다가 그 사유가 소멸하여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퇴직이 제한되는 경우 등 형사재판 결과에 따른 인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들이 있음.

현재 실무적으로 각 기관은 소속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조회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재판에 대한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하고 있으나, 상당 기간 소속 공무원의 형사재판 결과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관련 인사 조치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개정안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의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10일 내에 통

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라고 보임.

다만, 개정안의 문언에 따르면,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을 포괄적으로 통보의 주체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현행 형사사법 제도상 경찰 등 수사기관은 공소를 제기·수행하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통보의 주체를 검사가 소속되어 있는 공소 제기 기관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입법적 보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인사혁신처 및 행정안전부는 형사재판 결과를 통보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 등 발생 여부를 적시에 인지할 수 있게 되어 그에 따른 인사 조치 지연 등의 문제가 해소되어 효율적인 인사행정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임.

법원행정처 및 경찰청도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으로, 경찰청은 개정안은 법문 해석 및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사재판 확정 사실의 통보 주체를 공소를 제기한 기관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42